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580호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거창군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긴급히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 조 제목 및 제1항·제3항, 제5조 중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상 및 범위”를 “범위”로 “규칙으로”를 “군수가 따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u></p>	<p><u>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u>긴급히 재난기본소득</u>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u>긴급재난지원금</u>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재난기본소득</u>”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긴급재난지원금</u>”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p>
<p>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u>재난기본소득</u>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u>재난기본소득</u>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제4조(긴급재난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u>긴급재난지원금</u>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u>긴급재난지원금</u> 지원 범위 등은 <u>군수가 따로</u> 정한다.</p>
<p>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u>재난기본소득</u>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u>긴급재난지원금</u>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p>	<p><삭 제></p>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30
----------	---------

제출연월일	2020. 5. 6.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중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군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사용 용어로 변경(안 조례 전반)

1) 긴급 재난기본소득 ⇒ 긴급재난지원금

나. 이중지원 제한근거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13일

거창군 조례 제2581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자비용”을 “이자비용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u>이자비용</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지원·제외 대상) ① (생략) <신 설></p> <p>②~③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과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u>이자비용 등</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지원·제외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u>지원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 제2항·제3항과 같음)</p>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

나. 관련 조문

1) 제4조제3항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지원액 \ 연도	2020년도
군비	8,58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도)

가. 지원대상 : 거창군 거주 관내 소상공인 8,585업체

나. 사 업 비 : 8,585백만원(재난관리기금)

1) 8,585개소 x 1백만원 = 8,585백만원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문 재 식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31
----------	---------

제출연월일	2020. 5. 6.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8,58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웅길 20-103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공향리 1346-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웅길 20-103	20090401	20200513	거창군 고제면과 거창군 웅양면을 잇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716-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누룩재길 106-16	20090401	20200513	마을 돌레에 느릅나무가 많았고, 서쪽 주상면 내오리로 넘어가는 재를 누룩재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	
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71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누룩재길 106-26	20090401	20200513	마을 돌레에 느릅나무가 많았고, 서쪽 주상면 내오리로 넘어가는 재를 누룩재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공향리 74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매학길 81-94	20090401	20200513	매화나무와 학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259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연곡길 68	20090401	20200513	마을 뒷산이 제비 모양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산7-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조금실길 455	20090401	20200513	조금실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보(형남호*)』 등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거창군수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보[형남호*]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농업법인 누리농산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개화2길 136	무단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지상1 차고시설을 주택용도로 용도변경 지상1 차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사찰) 용도로 용도변경	시정촉 구 (2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개화2길 136	폐문부재 [이사감]

4. 공고기간 : 2020. 5. 12. ~ 2020. 5. 27.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6. 안내사항

가. 시정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즉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940-36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건설기계 직권말소,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 2020. 5. 7. ~ 2020. 5. 31.
3. 공고대상 : 46건(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0년 5월 7일

거 창 군 수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2차)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상림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거 창 군 수

□ 매입대상지 선정 기준

- ①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창읍 중앙·상림·대동리 등 2층 이하 저층 주택 및 나대지
- ②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한지 30년 (사용승인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④ 대지면적이 60㎡ 이상 500㎡ 미만이어야 한다.
- ⑤ 대지경계 등 부동산 물권권리에 하자가 있는 필지는 제외한다.
- ⑥ 기타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매입필지 가점 적용 기준

- ① 나대지나 폐가는 가점 적용한다(단, 건축 경과년도와 무관함)
- ② 면적(인접필지와 병행 신청할 경우 합필면적)이 크거나 공지 인접필지는 가점 적용하며, 기타 지역적인 균형배치 및 인근의 공영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잔존가치가 적은 건축물 등)에 따라 가점 적용한다.
- ④ 기타 현장조건(경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한다.

□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계약 방법

-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계약한다.
- 매입필지 선정 시 매입계획 필지보다 약30%를 추가 선정하여 예비 매입필지로 지정 후 매매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점수 순으로 이를 대체하여 계약한다.

□ 기타사항

- 매매대상은 소재지상의 모든 물권을 포함한다.
-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 등기상 권리하자가 없어야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명도(거주자 퇴거 포함) 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로 문의(전화 940-338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20. 5. 8. ~ 2020. 5. 22.(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3층)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직접 신분증 지참 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
- 건물(나대지)사진(별지2)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이력 포함)

【별지 1】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 일자		③ 건물 주 거주여부	(거주, 비거주)
④ 물건소재지				⑤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⑥ 토지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 도로폭	m		⑧ 구 조	철근콘크리트 () 벽돌 () 시멘트블럭 () 기타:	
⑨ 대지면적	m ²		⑩ 건물연면적	m ² (지상 층/지하 층)	
⑪ 건물사용 승인 일	년 월 일		⑫ 임대가구수	가구	
*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건물(나대지)사진(별지2에 전경.근경 부착)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지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거창군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본 부지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인)			
신청인 (대리인 신청시)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소유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수 귀하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신청 위임장

- 물건 소재지 :
- 대 지 면 적 : m²
- 주 택 유 형 :
- 건축 연면적 : m²(지상 층/지하 층)
- 소유자 성명 :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단독주택지(나대지)의 매입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0. .

붙 임 : 토지(건물) 소유자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임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2】

건물(나대지) 사진

전 경 (주변 건물보이게)

근 경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5월 0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재단 조직 내 구성 인원 중 부단장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읍면 방재단 대표 선출 기준 변경(안 제2조제7항)

1) 단원 중 호선 →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
다. 단장 해임사유 신설(안 제4조제1항)

라. 방재단 활동계획서 제출 시기 변경(안 제8조제7항)

마. 방재단원의 여비지급 규정 신설(안 제8조제10항)

바. 방재단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삭제 (안 제12조)

1) 방재단 교육 서면교육으로 같음

2) 단원 연 2회 8시간, 단장 연 1회 4시간 전문교육 이수 삭제

사. 단원의 재해보상 규정 신설(안 제16조)

1) 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지급방법 및 절차 기준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05. 08. ~ 2020. 05. 2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안전총괄과

2) 전화번호 : 055)940-3633, FAX : 055)940-8914

3) 전자우편 : ssw0531@korea.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무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거창군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과약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군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증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금지 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 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6조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 위 및 등급 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 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제 000호

위촉장

주소
성명

귀하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
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2)]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p>[특이사항]</p> <p>([별지 제1-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p>				

상기 본 단체는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 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3)]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1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

본인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나 및 민간단체의 대표 등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2)]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1호서식(3)]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거창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출 입 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height: 1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사 진 (3×4cm)</p> </div>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바탕 배경에 거창군 상징(휘장) 삽입

↑
7.
7
cm
↓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애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0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부칙 <제16880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사업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㉔부터 ㉔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31] [행정안전부령 제80호, 2018. 10. 31, 일부개정]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31.]

부칙 <제80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 한다.